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9. 26 선고 2024가단633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## 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비즈

담당변호사 장수홍

변 론 종 결 2024. 8. 29.

판 결 선 고 2024. 9. 26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 2022. 10. 31. 체결된

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23. 3. 30. 접수 제179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## 이 유

### 1. 인정사실

【인정근거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8, 12 내지 16호증, 을 제1,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】

#### 가. 상속재산분할협의

피상속인 D가 2022. 10. 31. 사망함으로써 배우자 E, 자녀 피고, F, C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, 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D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)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2023. 3. 30.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#### 나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과 이에 관한 소송의 경과

- 1) 위 공동상속인 1인인 C는 2000. 5. 3.경 G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, 2001. 7. 28.을 기준으로 그 사용 원금은 500여만 원이었다.
- 2) G은행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H저축은행이 양수하였고, 위 저축은행은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소8979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. 4. 27.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.
- 3) 위 H저축은행은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2476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. 4. 5.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10. 4. 30. 확정되었다. 위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은 C의 모친인 D가 수령하였다.
- 4) H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2019. 12. 13.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94151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. 5. 19.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5) C는 위 2)항과 4)항의 확정된 공시송달 판결에 대하여 2023. 8. 23.과 2024. 2. 26. 각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.

## 2.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

원고는 피고와 C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사해행위라며 C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/9지분에 관하여 그 취소와 말소등기를 청구하고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, ②, ③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그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① C는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 외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. 더욱이 C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마저 현재 추완항소로 그 존부를 다투고 있다.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에 대한 채권액은 원금 기준 500여만 원에 불과하고, 무려 20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다.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, C가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형제인 피고가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.

②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에 관하여 모두 3건의 소송이 있었으나, 그 중 2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므로 C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. 나머지 1건은 모친 D가 생전에 수령한 이행권고결정등본인데, 수령 당시 70세를 넘은 D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의 법적인 의미와 내용을 알았다거나 C에게 이를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. 더욱이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때는 D의 이행권고결정 수령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때이다. 원고가 위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나,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C에게 그 결정정본이 송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. 따라서 C뿐만 아니라 형제인 피고도 C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.

③ 이 사건 부동산은 D가 20여 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배우자 E와 함께 주거용으로 거주하던 것이다. 배우자 E이 아직 생존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나, 연로하여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, 피고가 장남으로서 인근에 거주하며 장기간 부모를 보살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합의로 피고에게 단독 상속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. 이는 통상적인 상속재산 분할에 부합하므로, 공동상속인들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.

따라서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채권자취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

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창현

별지